

# 제41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 (임시회)

제 4 호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21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	2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	2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	2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	2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	2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	2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0398) .....	2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	2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	4

---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여전히 불참하고 계셔서 법률안 상정과 심사 및 법률안에 대해서 실시되는 입법청문회도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조속히 참석하셔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과방위가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까지 마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0)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0)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1)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29)
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9)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8)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14시02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시급하게 방통위 관계 법률안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의해 위원회 의결로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하는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의원** 존경하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시을 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결원된 날부터 자체 없이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궐 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건의 방통위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 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최민희 의원님, 김현 의원님,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7개월 넘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고 방심위원 후보자도 위촉하지 않고 있으며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 임명 또는 보궐 위원 임명을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려는 내용 등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취지의 제21대 법안에 대해 국회 각 교섭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할 차례입니다.

추후의 의사일정으로 오늘 상정한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입법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으로부터 보다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토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나 소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관계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14시07분)

○위원장 최민희 의사일정 제8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면 위원 (손을 끊)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먼저 받고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 부평갑 노종면 위원입니다.

2023년, 지난해 11월 15일에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를 위한 신청서가 방통위에 접수됐습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 만인 11월 16일에 방통위에서 심사 계획이 의결됐지요. 이와 관련된 속기록을 포함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또 11월 29일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류 의결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심사위 가동이 됐고, 물론 변경안 보류될 때도 심사위가 가동이 됐는데 이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 등 활동 관련 문건 일체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엔티가 계획서 제출한 것 그것도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2월 7일 최종 매각 승인이 나는 그 절차와 관련된 문건 일체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본격적인 입법청문회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비

롯한 증인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민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력 앞에 당당하게 시민 앞에 겸손하게,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졌습니다.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들고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의결하면서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입법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그동안 기형적으로 운영돼 온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의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합의제는 의사결정이나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 및 행정의 공정성이 강조될 경우 또 업무의 결정 및 처리에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적합한 조직 유형입니다.

합의제 기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사는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 5명의 방통위원이 활동을 하고 참여하고 심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관으로 참여를 통한 민주성, 신중성,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운영 절차에 대한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문회는 중요한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 정부 관계자나 이해관계인 그리고 기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진술 등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청문회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안 심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입법청문회가 상임위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입법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들 사이에 토론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입법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홍일** “선서, 본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증인 김홍일

증인 조성은

증인 이현

○**위원장 최민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첫 회의를 열고 김현 간사님을 선임한 후 6월 14일에 법안을 상정하는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 6월 18일에는 방통위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안건으로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세 차례 회의의 중 6월 14일 회의와 6월 18일 회의에는 김홍일 위원장께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회의였습니다. 6월 14일에는 방송 4법 등 모두 방통위 소관 법률안이 상정되고 대체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특히 6월 14일에 6월 18일의 현안질의를 의결하면서 김홍일 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도 분명히 요청했으나 위원장은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김홍일 위원장께 묻고 싶은 질문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됩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위원장님, 최근 대통령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증인 김홍일** 예,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특별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증인 김홍일** 예.

○**이해민 위원** 지금 방통위가 정상적인 운영 안 되니 거부권 행사 그만하시고 상임위원 선임 서둘러 달라, 방통위 정상화시켜 달라, 우리나라 방송·언론 환경이 다 망가질 것 같아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는지요?

○**증인 김홍일** 국무회의 끝나고 잠시 본 거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께서는 방통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을까요?

○**증인 김홍일** 저희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방통위가 존재하는 이유, 방통위의 가치, 두 가지 단어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방통위는 결국.....

○**이해민 위원** 두 가지 단어만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김홍일**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해민 위원** 두 가지 단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

○**이해민 위원**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방통위가 지켜야 될 가치 두 가지를 답변을 못 하시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현재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방송의 문제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예스, 노’ ‘예, 아니요’로 답을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예, 아니요’로 답을 주시지요.

○**증인 김홍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예, 아니요’로 답을 주시지요.

○**증인 김홍일** 다시 한번 물어 주시지요.

○**이해민 위원**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증인 김홍일**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계속해서 답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초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법률안을 수정해서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변경된 것은 합의에 의해 의결을 하라는 취지 맞지요?

○**증인 김홍일**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2인 체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습니까?

○**증인 김홍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위원** 이전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지만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 그렇다면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해민 위원** 2인 체제가 5인 체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 방통위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이 전부 임명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해민 위원** 왜 임명이 안 됐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미비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대부분 합의제 행정기구들은 의사정족수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 3법이랄지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현 간사님께서 방통위원으로 계실 때도 3인 체제였지만 야권 추천 위원의 반대의견은 항상 묵살이 됐었고 결국 2인 의결로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그리고 이사 해임 이런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가 아닌 4인 이상 정도로 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방금 말씀하신 바람직한 5인 체제에 가깝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가 지금 그렇다면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님은 바람직한 5인 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홍일** 제가 청문회 끝나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조속히 빈 세 자리의 상임위원들을 추천해 주셔서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이해민 위원** 짧게 해 주시지요.

○**증인 김홍일** 그리고 금년 연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추가해 드리세요.

○ 이해민 위원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위원장이라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통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위원님들을 그리고 대통령을, 여당 위원들과 대통령을 설득하고 다니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님은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바람직하지 아니한 현재 운영 체제를 그대로 지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개선할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최민희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노종면 위원 김홍일 위원장님!

○ 증인 김홍일 예.

○ 노종면 위원 앞서 말씀드린 자료 서면으로도 목록화해서 드릴 테니까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주실 수 있지요?

○ 증인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 노종면 위원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소신이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님 말씀대로 방통위 설치법이 좀 더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 증인 김홍일 그것은 국회에서 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종면 위원 아니, 무슨 기관장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라요? 입법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해지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습니까?

○ 증인 김홍일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종면 위원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 증인 김홍일 예.

○ 노종면 위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증인 김홍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 노종면 위원 지금까지 판단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합리성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무리한 법으로 보입니까?

○ 증인 김홍일 의사정족수에 관해서요?

○ 노종면 위원 예.

○ 증인 김홍일 의사정족수를 4인이고 5인이고 이렇게 딱 정해 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제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협약에 대처를 한다든지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즉시……

○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본적인……

○ 증인 김홍일 처리 못 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 노종면 위원 예, 이해했어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의사정족수가 보통은 어떻지요?

○ 증인 김홍일 특별히 뭐 정함이 대부분……

○ 노종면 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습니까?

○ 증인 김홍일 예, 의결정족수는……

○**노종면 위원** 기본적인 의결정족수가 그러한데 지금 방통위는 그것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법에 없다는 이유로.

○**증인 김홍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의결정족수는……

○**노종면 위원** 아니,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잖아요, 기본 의결정족수가 틀려요? 아니에요?

○**증인 김홍일** 그게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의사정족수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종면 위원** 됐습니다.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또 세 법률에, 그런 부분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셨고 다만 그 법에 대한 판단 여부는, 찬반 여부는 좀 더 판단하시겠다고 하셨고.

○**증인 김홍일** 예.

○**노종면 위원** 적어도 지금 세 법률이 논의되고 있으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홍일** 예.

○**노종면 위원** 지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 마련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어……

○**노종면 위원** 마련하고 계세요, 아니세요? 모르세요?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8월, 지금 곧 임기가……

○**노종면 위원** 아니, 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증인 김홍일**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증인 김홍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아직은 없고요?

○**증인 김홍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진행 중입니까?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그것도 2인 체제에서 의결하실 거예요?

○**증인 김홍일** 지금 임기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서잖아요. 바꾸겠다는 계획서잖아요. 중요한 의결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중요합니다.

○**노종면 위원** 매우 중요한 의결이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런데 현행법상……

○**노종면 위원** 조금 전에 중요한 의결은 지금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도 밝히셨지요?

○**증인 김홍일**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그냥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김홍일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2인 체제로, 이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로 의결하신 두 분이서, 대통령이 임명한 단 두 분이서 의결한 안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시겠지요?

○**증인 김홍일**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예,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 74건을 의결하셨더군요. 이게 정상적인 방통위라고 보십니까? 법 취지에 맞아요? 법 취지에 맞지 않지요. 법률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5인 정원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된 게 지금 몇 달입니까?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서 지금 김홍일 위원장님 체제에서 무려 74건의 중요한 안건이 처리됐어요.

○**증인 김홍일** 상임위원 선임 완료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시지요. 거기에 동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사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퇴하실 의향 없어요?

○**증인 김홍일**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없어요?

○**증인 김홍일** 예.

○**노종면 위원** 일말의 책임을 못 느낍니까? 단 두 명이서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습니다.

○**증인 김홍일** 저는 수회 상임위원 선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게 안 된다고 막 밀어붙입니다?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계속 요구해야지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고 단 하루 만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동관 위원장 체제이고.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으셨잖아요.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 치우는 그 의결 과정에 방통위원 두 명이, 그 두 명이서 결정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김홍일 위원장님이시고요.

○**증인 김홍일**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노종면 위원** 두 명이셔요? 그러면 법에서 방통위원 두 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사퇴하십시오.

○**김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께 2분 넣어 드리시지요.

○**김현 위원** 처음에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지금 답변하는 방통위원장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 첫 번째 이해민 위원이 ‘예, 아니요’라고 답변하라고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답변이 ‘예, 아니요’가 아닌 방식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노종면 위원님께서 의결 건수가 몇 건이냐는 질문에 위원장님이 세어 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이미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2인 체제에서 몇 건의 심의 의결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고 그 자료요구가 나올 때

담당 국에서 그 요구를 받아서 최종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지만 국회의원들한테 자료제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이 자료가 무엇이 나갔는지도 모르는 채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특히 아마 방송통신위원회를 마치고 국회에 처음 오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입법청문회 자리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의 답변과 내용 준비를 안 했다면 이 입법청문회가 온 국민이 보고 있고 그것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성실하지 않게 답변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진행의 이후에 위원들의 질문에 위원장의 답변이—질문에 대한 답입니다—질문을 정확히 듣고 답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뒤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담당 국장을 통해서 몇 건이 보고됐는지를 쪽지를 받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님, 우선 말씀하실 때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특히 뒤에 지금 배석하신 두 분께서 좀 센스 있게 그때그때 메모 드리고 그렇게 하시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경기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김홍일 위원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직무를 행하실 때 사람에 충성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렇다면 국민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그래서 때때로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민심이라면 총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범야권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확인된 민심을 조금 더 방통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위원이 다 구성된 형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이준석 위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기에는 이미 국회에서는 추천 봉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저는 요청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뭐 위원장께서는 검찰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셨으니까 만약에 위원장께서 중요한 검찰 직위, 예를 들어 중앙지검장에 보임되셨는데 대통령께서 실제 실무를 봐야 할 차장들의 임명을 거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것을 임명권자의 어떤 의사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일하라는 의사입니까, 나가라는 의사입니까?

○**증인 김홍일**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이준석 위원** 만약 반복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임명권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이준석 위원**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데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검찰 공무원으로서 하셨을 판단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에서 적계는 70건, 많게는 110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과 나머지 한 분의 위원이 생각이 엇갈린 사안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홍일** 생각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실제로 그래서 둘의 표결이 엇갈리게 나타난 형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증인 김홍일** 그런 것은 사전에 보고 과정에서 전부 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에서는 두 분이 항상 동의하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증인 김홍일** 대부분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와 개의정족수를 맞춰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야권에 협행 국회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국무위원들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대통령과 범여권에서는 이런 것이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생각대로 합의의 정신보다는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합의의 정신이 우선입니까?

○**증인 김홍일** 상임위원 선임 완료하는 것은 저희 지금 기왕에 임명받은 상임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국회와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상임위원 선임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응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직을 계속 지키시면서 이 조직이 원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의견을 받들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결국 야권이 추천한 그런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의 선후가.

○**이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예전에 저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을 국회에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것, 이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거부권 정치도 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과거 모 정당에서 있었던 도장 런과 비슷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장 찍는 권한, 그 미약한 권한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옥새 들고 나르샤 하고 계시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위원 더 질의시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는 과거에 그 정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에서 3명의 최고위원이 웰위되었다는 이유로 초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고 당 대표를 잘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관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방통위에서 현재 3명의 위원이 빠져 있다는 사실, 비상사태로 인식하십니까,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장하시지마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증인 김홍일 국회에서 신속히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서울시 관악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률들을 개정한 것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사위를 거친 뒤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수 있는 방송 정상화 4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직 입법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민규 위원 방송 3법은 다소 상충적이었던 일부분을 수정해서 재의결되어 법사위로 넘어갔고요. 방통위 관련돼서는 사전에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방통위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정상화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무분별한 너무나 많은 거부권 행사가 이번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김홍일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2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이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총 14건입니다.

그렇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5년 동안 열심히 헌법정신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부권을 국회, 민의를 존중하는 의미로 남용하지 않아 왔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김홍일 잘 모릅니다.

○**박민규 위원** 1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2건입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평계를 대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 시절로 기억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3년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같은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여소야대였습니다. 그때 겨우 2건 했습니다.

본 위원은 김홍일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만약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된 방송 3법과 방통위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처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자리에서 그럴 약속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건 뭐…… 그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민규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통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을 법률로써 재심의한 뒤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 것처럼 2023년 3월 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 민주당 3, 국민의힘 2인 체제였던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회는 야당 추천 봇으로 최민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대통령은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뒤 자동 사퇴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23년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임명한 이후 2인 체제의 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통위 운영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의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운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저희들이 유지하고 그렇게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상임 위원들을 조속히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이정현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종전에 상임위가 여야 협의하에 개최가 되고 그 경우에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들어 와서 그래서 출석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양해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을 이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계속 버티면 과방위는 개점휴업 상태로 이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하여튼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가 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헌법 62조 2항, 국회법 121조 3항, 국회의 요구에 의한 기관 출석은 의무입니다.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조치 등 법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최근에 만났는데 별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불완전성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증인 김홍일**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없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이정현 위원**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국회에서 추천이 온 뒤에 임명의 문제가 남는 것인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국회에서 추천이,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추천이 간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최민희 위원장 사례도 있었듯이 정당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임명을 추천한 것들의 경우에도 제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방통위 쪽에 문의를 해 보니까 단 한 차례도, 정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에서 발신한 서류가 없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1월 24일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실 때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의 진정성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5인 체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5인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도 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안 하는 겁니까?

○**증인 김홍일** 추천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임제입니까, 합의제입니까? 기본적인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증인 김홍일** 합의제입니다.

○**이정현 위원** 합의제 필요성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홍일**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이 확보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이 필요할 경우……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중립성과 공정성이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74건의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PPT 파일을 준비했는데 PPT 파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파악한 74건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1월 24일 첫 회의에서부터 74건을 심의하셨고 처리를 하셨습니다.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죽 74건을 검색해 보니까요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한 현안들보다는 방송과 통신 분야 언론 장악을 위한 안건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실례보면 말이지요. 대부분 한국방송공사의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문화방송, JTBC 그리고 YTN,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관련된 모든 심의들에 대한 안건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앞장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충질의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위원님들께서도 다음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께서 방문진 이사 공모와 관련한 질의를 했지요. 그때 임기가 만료되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만약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방문진 이사 공모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증인 김홍일 임기 만료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아까 똑같은 답변하신 거고요. 임기가 만료됐는데 방문진 이사가 새로 선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MBC가 멈춰 섭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법상으로……

○위원장 최민희 아니, 이것에 답변해 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증인 김홍일 예,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잠깐만요.

방송정책국장,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증인 이현 예.

○위원장 최민희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런데 후임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방문진이 멈춰 섭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 이현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이사가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장 최민희 예, 들어가 주세요.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올해가 자유언론실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언론계의 선후배들 그리고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신장돼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언론자유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오히려 방송을 통제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진 근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2인 체제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방통위의 주요 정책 중 KBS 경영진 교체, YTN 민영화, 이 두 가지입니다. KBS와 YTN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3일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9시 메인뉴스 이소정 앵커가 클로징 인사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간판 프로 ‘주진우 라이브’가 폐지되고 ‘최강시사’가 폐지되고 또 ‘더 라이브’도 폐지가 됐습니다. 편성규약에 따르면 제작진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완전히 편성규약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KBS는 14일 날 경영진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무엇을 사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10주기, 제작진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불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 MC가 당초 한가인 씨에서 조수빈 전 아나운서로 교체됐고 아직까지 역사저널은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행정망이 마비된 이런 사태가 터진 날 땡윤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영일만 석유 관련해서 KBS는 메인뉴스에 무려 10꼭지의 리포트와 장관 출연까지 23분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당일 날 MBC는 3꼭지, SBS는 4꼭지의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김백 사장 취임 후에 모든 뉴스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시사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많이 폐지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발영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아니,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구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발영상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녹취를 방송에 쓰지 못하게 하고 김건희라는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있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YTN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에서 만들어진 결정사항 때문에 KBS와 YTN이 이런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방통위에서 개별 지상파 방송국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런 방송 내용의 심의나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 사장을 임명하고 그 당시에 이동판 위원장이나, 방송을 누가 봐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방송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방송을 통제하고 방심위를 동원해서 방송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방송 심의는 저희들과는 별개의 독립된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쓰십시오.

○**이훈기 위원** 지금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9년, 10년에 MBC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KBS 사태의 판박이입니다. MBC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이 돼서 그 당시에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KBS 장악 문건을 보도했는데 똑같이 판박이입니다. 이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이 없습니다.

○**증인 김홍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 없으십니까?

○**증인 김홍일**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기 위원** KBS, YTN의 폐해가 계속 드러났는데, MBC도 전철을 밟을 게 뻔한데 절차를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오히려 현행법에 따라서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대로 준수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 국장님, 좀 아까 위원장님의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통위와 방심위는 어떤 관계인지 제가 질문할 거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 독립기구인데 방통위가 방심위를 실질적으로 감사했는지 좀 이따 저에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거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방송법 1조를 아십니까?

○증인 김홍일 예.

○정동영 위원 방송법 1조 내용을 외울 수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외우진 못하고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여서 민주적 여론 형성을 해서 방송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정동영 위원 잘 아시네요.

방송통신위원회법 1조도 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정동영 위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1조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의 그토록 중요한 독립성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적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했습니까? 평생 문외한으로 살아온 분 아닌가요?

○증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보직을 맡은 이후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 안 합니까?

○증인 김홍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적입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대통령과 만난 날짜와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김홍일 국무회의 끝나고 이렇게 죽 돌아가면서 그때 한번 봤습니다.

○정동영 위원 국민적 상식은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적 상식입니다. 상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공통 감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통위는 상식이 무너져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과방위 의사결정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혼자?

○위원장 최민희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김홍일 위원장 혼자 방통위 의사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정동영 위원 안 되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1명이 결정하는 거나 2명이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권익위, 권익위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하셨으니까?

○증인 김홍일 예.

○정동영 위원 15명이지요?

○증인 김홍일 예.

○정동영 위원 거기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외국인한테 받았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몇 대 몇으로 결정했지요? 8 대 7입니다.

어쨌든 권익위 15명, 인권위 11명, 공정거래위 9명, 개인정보보호위 9명, 금융위원회 9명, 감사원 감사위원회 7명, 이 합의제 기구는 모두가 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이게 일반 상식이고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단군 아래 아마 방통위가 처음인 것 같아요. 혼자 결정하고 있어요. 이거 헌법정신 위반이고 법률 위반입니다. 상식 파괴입니다.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사사오입 개헌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정동영 위원 1954년 11월 29일 20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35명이 이승만 3선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입니다. 135명이 3분의 2입니까, 136명이 3분의 2입니까, 김홍일 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136명입니다.

○정동영 위원 136명이지요. 그게 상식이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당시 정권은 사사오입을 해서 ‘135명이 맞다’ 이렇게 해서 3선 개헌을 처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입니다. 70년 만에, 1954년 사사오입 개헌 그 이후에 최대의 오점이 바로 방통위 1인 체제입니다. 2인 체제가 아니에요.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YTN을 팔아넘기고 KBS 사장을 바꿔치기 하고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방통위, 본 위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아까 그 말씀……

○정동영 위원 미국의 유명한 법률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법률가란 기술적으로 뻔뻔하고 그리고 말장난으로 인간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다’ 저는 로렐이라는 법학자의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인 김홍일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서구갑 조인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방통위법 1조에 위원회의 독립적 보장을 보장하고 있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혹시 방통위법 3조 2항 내용 아십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그건 정확히……

○조인철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조인철 위원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부조직법 18조가 뭐냐하면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입니다.

○증인 김홍일 예.

○조인철 위원 이렇듯 방통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까지 배제할 정도로 그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관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증인 김홍일 결국 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해서 그것이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지요.

○조인철 위원 방통위의 집단지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2명으로 한다, 바람직한가요?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여튼 상임위원 선임을 빨리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명인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별 노력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칠십몇 건을 두 분이서 처리하면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작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안건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더 나은 방향을 찾게 되고……

○조인철 위원 그 위원님이 두 분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선라인으로 죽 타고 올라오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철 위원 결국은 위원장님 뜻대로 다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철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돼 있고 그 두 분이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합의제 기관이 아니고 계선라인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장관, 차관 두 분이서 결정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나중에 저희들이 죽 안건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조인철 위원 누구하고 토론을 합니까? 두 분이서?

○증인 김홍일 지금 위원이 둘이니 사전에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다른 때는, 다섯 분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 김홍일 그때도 토론을 하고 또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얘기하시고 그랬겠지요.

○**조인철 위원** 사무처장님, 평상시에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섯 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증인 조성은** 안건 관련해서 상임위원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아마 보고드렸던 걸로 압니다.

○**조인철 위원** 사전에 보고드립니까?

○**증인 조성은** 위원님께서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라 그러면 보고했던 걸로……

○**조인철 위원** 보고드리고 위원회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정을 합니까?

○**증인 조성은**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됩니다.

○**조인철 위원** 완벽하게 조정이 안 되지요?

○**증인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런데 두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계선조직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성은** 그것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민희** 저기요, 잠깐만요, 조인철 위원님.

이거 멈춰 주세요.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멈춰 주시고, 잠깐만요.

사무처장님, 지금 이 자리에는 직전 방통위원을 하셨던 김현 위원님도 계시고 방통위 설치법을 설계했던 최민희도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이, 그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검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증인 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답변이요 사무처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해서 방통위가 운영되고 방통위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조인철 위원님의 질문했던 내용을 간담회로 대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방통위 설치법 및 방통위 회의규칙에 위반하는, 위배되는 발언임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것이 무슨 그냥 설령설령 얘기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오늘 입법청문회 이걸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사무처장이 얘기하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제가 중단시킨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김현 위원님의 지적하신 이 문제 제기가 타당하거든요. 좀 아까 하신 발언 속기록 돌려서 한번 볼게요. 속기록 좀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중단시킨 게 그 대목이거든요, 정확히 김현 위원님 제기하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속기록 가져와 보십시오.

국가기구가 간담회에서 중요결정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국가기구가 엉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잠시만 양해해 주시고 특히 조인철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아까 조인철 위원님 44초 남았을 때 제가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1분 더 드려서 1분 44초 드리고요.

지금 녹음한 것을 속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철 위원님 질의 속개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우리 합의제 기관은 절대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제 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우리 법은 그렇게 해서 독립성을 더욱더 강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제 기관에서 인정돼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도 건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법, 국무총리의 감독권도 행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명으로써 합의제 기관을 대신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장님께서는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노력을 안 하고 국회에서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저 나름대로는 하여튼 기자들 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도 제가 늘, 하여튼 빨리 선임이 완료됐으면 좋겠다……

○**조인철 위원** 기자들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인철 위원**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아니, 기자 간담회에서 그렇게 또 얘기도 했고……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증인 김홍일** 이것은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조인철 위원** 국회입니까, 최종 임명권자입니까?

○**증인 김홍일** 국회에서 추천을……

○**조인철 위원**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렇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추천을 해 주셔야 대통령께서……

○**조인철 위원** 추천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계속 추천을 하라라고 할 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제가 방통위원장 되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12월 29일 취임한 후에는…… 취임 자리에서도 하여튼 좀 국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특별히 조인철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중단시킨 데 대해서.

○**조인철 위원** 예, 맥이 좀 끊겼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맥이 끊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좀 아까 조인철 위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방통위에 취임하신 게 언제인

가요?

○증인 김홍일 작년 12월 29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작년이면 2023년……

○증인 김홍일 예, 23년. 제가……

○위원장 최민희 12월 29일입니까?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4·10 총선 민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일방독주, 다른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본인들 편한 대로 본인들만의, 자기 편만 쟁기는 그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정말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이 정권처럼 이렇게 폭압적으로 언론을 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방통위 그렇게 하지요, 검찰은 수시로 압수수색하지요, 기자들 집을 가서 텁니다. 그 과정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있어요. 그 첨병을 방통위가 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그렇지 않습니다.

○한민수 위원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입법청문회에 상정된 법안 중에 다수가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위원회로 전락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지난해 12월 29일 이후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 그 인수위 팀장으로 출입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청와대 출입할 때 당시 방송통신위가 만들어질 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정권 차원에서 이 기구를 통해서 방송이나 통신 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는가. 결국 나온 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었던 정당에서 1명, 야당이 추천한 2명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방통위를 뭐 어떻게 활용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지금은 최악의 운영 형태 아닙니까? 그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바람직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바람직한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최악이지요.

그러면 좀 전에 이준석 위원께서도 물어보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대통령이 2명 임명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임명하신 분은. 2명 중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정확히 처리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그……

○**한민수 위원** 아까 시간 됐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74건이랍니다.

○**한민수 위원** 그중에 두 분이 의견이 달랐던 건수가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내부 사무국에서 보고 과정에서 더 나은 의견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런데 합의제로 운영을 하라는 것을 독임제로 운영할 때 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두 분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것 보면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서로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일 위원장께서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인 체제도 심의 의결하는 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 하셨는지 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압니다.

○**한민수 위원** 벌써 사법부는 ‘2인의 위원 결정은 방통위법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집행정지 항소심에서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 될 여지가 있다’ 분명히 판시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검사 생활, 법조인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그 판결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2인 체제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판결에서는 2인 체제보다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판례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한민수 위원** 예,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금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일단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 이렇게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 불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벌써 이미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홍일 위원장님이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검사 생활 때의 생활도 그렇고 공직 생활을 그렇게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방통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증인 김홍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관련된 판결에서 언급한 게 두 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방문진 이사와 관련한 판결에서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YTN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혹시 보좌진들이 그 판결문의 그 부분, 빨리 자료 좀 검색해서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의 취지는 2인 체제가…… 정확히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 판결……

○**증인 김홍일** ‘2인 체제하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황정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김홍일 위원장님,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2인 체제가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여전히 방통위 2인 체제의 호위무사를 스스로 자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인 체제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난 5월에는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제 정신을 파괴한 방통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홍일 위원장님 체제 안에서, 2인 체제 안에서만 74건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님 체제까지 죽 포함하면 2인 체제 안에서 그동안 안건은 113건이나 의결이 되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2인 체제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원을 조속히 선임해서 완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방통위법 13조 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다음에 2항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그것에 많은 법률가들도, 그 안에 전부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위원장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일시적’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뜻합니까?

○**증인 김홍일** 일시적이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사전적인 의미로는 ‘짧은 한때’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통위가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서에는 2인 체제 운영이 가능한 조건으로 ‘일시적으로’라는 단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라고 볼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한 것이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이후에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 합의제 행정기관이 법률상 운영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2인 체제가 일시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인 체제 운영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선임 과정에서 국회에서 추천도 해야 되고 추천하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일시적’의 의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방통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일시적인 2인 체제가 아니라 상시적 2인 체제를 위해서 위법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 최민희 당시 상임위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개월간 임명을 미루다가 결국 후보 스스로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2명이 사실상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독임제 구조의 성격을 띤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합의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이고요.

위원장님, 방통위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률자문을 받으셨을 텐데 오히려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시적이지 않은 2인 체제, 합의제 기능을 상실한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성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김홍일 위원장님이 2인 체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상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에도 2인 체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에서도 국회에서 조속히 상임위원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연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2인 체제하의 위법한 의결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해 오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데 지난 2017년에도 50여 일 동안의 2인 체제 운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단 한 번, 단 한 건의 안건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제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법한 2인 체제를 거의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도 김홍일 위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차원의 모든 가능한 절차를 동원해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한 2인 체계로 밀어붙인 의결에 대해서도 아마 곧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기가 언제 끝날 줄 모르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방통위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놓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으로부터 긴급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증인의 발언이 굉장히 일관된 답변만 되돌이표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 또는 2인 체제의 불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한 저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어떤 법적 절차인지 모르겠으나 간담회라는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실제로 투명하게 어떻게 반대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간담회 또는 사전에 나온 반응이라는 것이 혹시 공식적인 경로로,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여러 경로로 사무처를 통해 수신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해당 자료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듣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조인철 위원님이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명백히 이것은 위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회의의 소집이 있습니다.

제3조의 1항은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입니다, 위원장은.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때 위원장은 의장이기 때문에 2명의 위원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라는 겁니다.

명백히,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입니다,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은 5명이 재적위원이냐 현재 있는 인원이 재적위원이냐라는 것을 둘러싸고 2017년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률자문을 구했는데요.

좀 전에, 그러니까 두 가지 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는 명백히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무처는 각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장은 회의 소집에 대한 권한과 아울러 의제를, 안건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는 비공식 회의입니다. 그래서 공식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위원 2인 이상이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위원회는 3인 이상이 돼야지만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한 회의운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탈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명백히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민수 위원이, 황정아 위원인지 헷갈리는데요, 해석을 받았고 법의 판단을, 전부 동의를 구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있을 때까지, 2023년 8월 24일까지 방통위 2인 체제, 3인 체제와 관련해서 법적인 자문을 얻은 것은……

○위원장 최민희 1분 더 드리세요.

○김현 위원 2023년 이후에, 즉 위원장님 오고 난 이후에 법률자문을 얻어서 전부 2인 체제로 중요한 의사진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법률자문을 구했고 세 군데에서는 할 수 있다, 한 군데에서는 하지 못한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위증임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의 질문은 아까 조성은 처장이 간담회 등에서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말했잖아요? 그 사전 조정의 형식을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말로 했느냐, 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전 조정한 간담회, 이게 저희는 규칙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니 그 간담회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이준석 위원님께서는 조금 구체화해서 지금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고 이 서면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일단 그 메일 내역, 주고받은 날짜부터. 사전 조정회의, 사전 간담회를 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김현 간사 위원님 지금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다수의 법률가들이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전부 동의한다는 빌언도 하셨나요?

○증인 김홍일 안 했습니다.

○김현 위원 하셨어요.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다수의 법률가들이 이 조문의 해석상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률조문이나 판단을 받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말로 했었지 이것을, 어디 뭐 조문 해석이나 이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은 너무 애이한 운용 방식 같아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 방송정책국장님!

○증인 이현 예.

○ **김우영 위원** 국장님은 국장으로 언제 부임되셨습니까?

○ **증인 이현** 지금 2주 됐습니다.

○ **김우영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12월의 12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일정을 발표했지요?

○ **증인 이현** 예, 그렇습니다.

○ **김우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주관한 겁니까?

○ **증인 이현** 예, 저희 쪽에서 안을 만들고 위원장님, 상임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최종 의결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 **김우영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 **증인 김홍일** 예.

○ **김우영 위원** 올 1월 21일 날 신년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심사 평가를 강화하겠다,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지요?

○ **증인 김홍일** 그것은 오래전부터 제가 듣건대 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하여튼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 **김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증인 조성은** 23년 6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김우영 위원** 지금 가장 오래되셨네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한상혁 위원장이 계실 때는 이현 국장님, 그때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셨지요?

○ **증인 이현** 예, 제가……

○ **김우영 위원** 그때는 위원이 몇 분이셨습니까?

○ **증인 이현** 제가 한상혁 위원장님 부임하고 바로 정책기획위원회에 파견을 2년 동안 가서 정확한 기억이……

○ **김우영 위원** 한상혁 위원장 때는 다섯 분이 계셨지요?

○ **증인 이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우영 위원** 한상혁 위원장은 23년 5월에 직권면직을 당하셨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감사원으로부터 특정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고의 개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 **증인 김홍일** 예.

○ **김우영 위원** 위원장님은 방송통신위원장이시니까 평상시에 TV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주 시청을 하십니까?

○ **증인 김홍일** 가끔 봅니다. 가끔.

○ **김우영 위원**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으면 봅니까?

○ **증인 김홍일** 별로,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TV를 자주는 못 봅니다.

○ **김우영 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방송사나 종편에 대해서 호불호의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김우영 위원 그렇다면 한상혁 위원장은 다섯 분이 합의제로 할 때 위원장을 하셨는데 특정 방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점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것으로 기소가 됐어요. 또 기소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서 그것이 허위문서 작성이라는 것으로 또 기소가 됐습니다.

다섯 분이 특히 야당 추천 위원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충분히 견제와 비판 기능이 살아있을 때도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거의 정서적 일체를 갖고 있는 두 분이, 특정한 정치적 정파성을 갖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두 분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연말 있을 방송사업자 심사과정에서 공정성과 관련된 기준을,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렸다,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오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증인 김홍일 그 배점 관계는요 22년부터 그렇게 배점을 올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한상혁 위원장님의 계실 때부터 배점을 확대했고……

○김우영 위원 아니지요.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렸지요, 이번에.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그렇게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고 작년부터 했답니다. 작년 23년도서부터 90점을 120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우영 위원 작년도는 이동관 위원장 때겠지요?

맞습니까, 이현 국장님?

○증인 이현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 달에 2023년 재허가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처음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런데 이게 특정한 지상파 혹은 특정 방송에 대한 현 윤석열 정권의 시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2인 체제의 아주 편향된 방송 인허가 기준을 가지고 연말에 방송에 대한 적극적, 뭐라 할까요, 정치적 탄압에 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게 합의제라는 정신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제는 위원장님의 독선이나 독단으로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위원들입니다.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김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방송통신위원장님, 지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시에 YTN으로부터 이상인 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기피신청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2인에서 결론을 내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 29일 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안이 보류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방송 공적 책임의 계획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12월 23일, 2023년 12월 29일 날 임명이 되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활동을 하신 거지요?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그러면 12월 20 날 MBC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문제가 부당하다, 그래서 방통위가 졌지요? 재판에서.

○증인 김홍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2심에서.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그때 2인 체제 결정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진 거잖아요? 그러면 2인 체제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률가가 위원장이 되셨는데 2인 체제에서 결론이 부당하다라는 것이 나왔는데 임명되자마자 2월 7일 날, 그것도 이동판 위원장이 보류해 놓은 것을 60일 만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그렇게 갑자기 임명을……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일단 지적하고요.

앞서 2인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상인 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인데 제척·기피를 안 시키고 그냥 하신 거잖아요. 3인이 있었다면 1명이 제척·기피가 되면 2인이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국회에서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2인이 계속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임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삼권분립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언제 상임위원 선임 완료가 끝날지 시기가 불확정한 상태에서 현안 문제를 처리 않는 것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면 되는 건데 지금 한 쪽에서는 해도 된다라는 건데 해서 불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판에서 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2인 체제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12월 20 날 법원 판결이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결정이 내려졌고 29일 날 임명이 되셨잖아요. 그 사이에 이동판 위원장 체제에서는 보류를 해 놓은 거를 60일 만에 전격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지금 일 처리를 하신 거예요, YTN 민영화를.

○증인 김홍일 저는……

○김현 위원 자,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하셨나요, 혹시?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절차법에 따라서 청문·공청회 같은 것 진행하셨나요?

○증인 김홍일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현 위원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또 위증하지 마십시오.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청문회 안 하고 공청회 안 하셨는데요? 60일 사이에 했습니까, 사무처장님?

YTN 매각할 때 청문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 이 행정 청문회나 공청회 했습니까,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진행 안 했지요?

○증인 조성은 .....

○김현 위원 안 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면 기억을 되돌아보세요.

○증인 조성은 예.

○김현 위원 안 하셨어요. 행정절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보류했던 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60일 만에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이것도 2인 체제에서 그냥 한 거예요,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이상인 위원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정한 거예요. 그 옆에 지금 사무처장과 국장님의 조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히 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마지막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2인 체제가 적법입니까, 5인으로 하는 2인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상당 기간, 1년 이 다 돼 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 아니 졌잖아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게 졌는데.....

○증인 김홍일 거기에서도 2인 체제 결정이라 위법하다고 판단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것도 틀린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논쟁할 생각은 없는데, 틀린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2인 체제에서 결정하실 겁니까?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들을 추천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김현 위원 상임위원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고 2인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합의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즉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을 데리고 독임제 기구로 운영하고 있고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회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불법, 탈법을 대통령이 한 것이고 불법, 탈법을 한 대통령 밑에서 위원장님이 지금 용산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처장과 국장은 그것을 지시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11건의 MBC 심의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계속 결정 문을 심의 의결을 해서 11건에 10개가 졌잖아요. 이 돈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지금 검사·감독권 행사하지 않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또 네 명이

예요, 방심위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치하고 계시는…… 그 직무유기는 하고 계시면서 2인 체제에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를. 그렇기 때문에 불법하다.

위원장님만 불법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무처장, 국장, 뒤에 배석해 있는 국장 모두 다 불법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그만두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나머지 이분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일을 계속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1분만 주시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위원장님.

---

위원장님처럼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전혀 위법하게 처신하거나 위법하게 직무집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위원장님의 주장인데 본 위원이 주장한 것처럼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 법률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김현 위원 됐습니다.

○증인 김홍일 저는 그렇게 근무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 사무처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세요. 아까처럼 간담회로 정합니까? 그동안 간담회에서 정했습니까?

○증인 조성은 아니, 간담회 얘기는……

○김현 위원 정했습니까? 그것만 ‘예, 아니요’ 하세요.

간담회로 결정했습니까, 의견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인 조성은 아니, 예전에 그렇게 한 걸,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송정책국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이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 위원 통상 1기에서 5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이현 그러니까 간담회나 차담회를 운영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지금 간담회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아닌 경우를 설명하시라고요. 법에 따라 하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현** 저희는 통상 2인의 경우에는 상임위원님,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다시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두 분 사이 이견이 좀 조율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회의에서 조정하지요? 공식, 비공식회의?

○**증인 이현** 공식, 비공식이라기보다는 보통 회의 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견이 좀 해소되고 해소 안 되는 것들은 안전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김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김현 간사 위원님은 지금 2분을 쓰셨기 때문에 추가질의에서 추가 1분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들의 질문과 위원장께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6월 14일하고 6월 18일 안 나오신 이유를 위원장께서 여야 협의가 관례인데 협의가 안 돼서 안 나오셨다고 했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게 알고 있어서 출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래서 안 나오셨다고 했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여야 협의 안 됐어요.

○**증인 김홍일** 오늘은 채택된 증인이라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앞으로도 법적 의무를 다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증인 채택이 중요한지 아시게 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통위가 독임제입니까, 합의제입니까?

○**증인 김홍일** 합의제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합의제는 누구와 누가 합의하는 겁니까?

○**증인 김홍일** 상임위원들끼리 합의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게 틀린 생각입니다. 방통위 구성상 방통위는 일단 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와 국회가 합의하더라도 여당끼리 합의하면 웃기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비교섭단체 2인을 넣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방통위의 합의제는 여야 합의제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상임위원끼리 합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 한 겁니다. 실망스럽고요.

그다음에 방송정책국장님!

○**증인 이현** 예.

○**위원장 최민희** 정확히 답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취임하신 이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에 임명한 사람 이름 대 보십시오. 빨리요.

○증인 이현 심의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증인 이현 저희 방통위 위원……

○위원장 최민희 예, 방통위원부터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누구 임명하셨습니까?

○증인 이현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위원장 최민희 이상인 부위원장. 또……

○증인 이현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위원장 최민희 이동관 위원장. 또……

○증인 이현 사퇴하시고 지금 김홍일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홍일 위원장, 세 분입니다.

이분들은 누구 추천 봤습니까?

○증인 이현 대통령 추천 봤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까지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봤만 임명했습니다.

조성은 쳐장님!

○증인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방심위 감사하신 것 지휘하신 일 있지요?

○증인 조성은 예, 방심위 감사 작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방심위원 구성 알고 계시지요?

○증인 조성은 ……

○위원장 최민희 답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이름 대 보십시오, 지금까지 임명한 사람.

○증인 조성은 류희림 위원장……

○위원장 최민희 류희림.

○증인 조성은 예, 기억이 나고요.

○위원장 최민희 기억이 아니라…… 공무원이 그렇게 일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이름 대 보십시오.

류희림 위원장. 또요.

○증인 조성은 그분 말고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 뒤에 배석하고 있는 직원 누가 계십니까? 연락관 계십니까?

○김현 위원 김성환 국장님, 그때 의안 담당하는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하신 위원이 누구인지.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김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김현 위원 아니, 김 국장이 아니라. 김영관 국장님 아시잖아요, 누구인지.

○위원장 최민희 시간이 가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임명하신 분 이름 대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이정옥 위원님 그리고 문재완 위원님 그리고 김유진 위원…… 두 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누구요? 김……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대통령 봇으로는 이정옥 위원, 문재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국회 추천 봇으로 임명된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국회 추천 봇으로는 기존의 위원님들이 유임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직을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임기 끝나고 다시 임명된 분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심의위원의 임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월 22일까지가 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유진 위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김유진 위원님……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는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4년 1월 17일까지 임기를 하셨다가 그다음에 2월 27일에 다시 복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 임기를 1월까지 하게 됐어요?

저기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과방위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분야에 빠삭하신 분들입니다. 열령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김유진 위원은 임기를 1월에 중단하게 됐어요?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제가 알기로는 김유진 위원님이 1월……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고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해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왜? 왜 해촉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그 사유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아까……

그런데 복귀했지요? 어떻게 복귀하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복직은 아마 법원의……

○위원장 최민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돌아와서, 지금 방심위에 대통령 추천 봇이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본안판결이 아니라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서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대통령 추천 봇이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위원장 최민희 이름 열거해 보십시오, 대통령 추천 봇.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대통령 추천은 류희림 위원장 그다음에 이정옥 위원님, 문재완 위원님, 김유진 위원님 이렇게……

○위원장 최민희 법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대통령 추천 봇이?

○방송통신위원회행정법무담당관 좌미애 제가 세 명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네 명으로 되면 이거는 무슨 상태입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은 뭐니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김홍일 김유진……

○위원장 최민희 아니, 위원장님!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그 김유진 위원 말씀하시는 것 안 하셔도 됩니다. 해촉됐다가, 그냥 이게 속세의 말로 하면 잘렸다가 법원에서 승소해서 다시 돌아와서 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추천 봇이 4명인 것, 정상입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그……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정상입니까?

○증인 김홍일 먼저 임명, 먼저 위촉된 분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어떤 결정이 없어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민희 4명이 정상이냐고 여쭈었습니다.

○증인 김홍일 하여튼 규정에는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게 위법한 겁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해촉하고 위촉을 했는데 그 해촉됐던 분이, 임시지위를 정하는 그 처분에 의해서 해촉됐던 분이 자리를 다시, 위촉자의 지위를 찾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일시적으로 적법합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현재……

○위원장 최민희 적법합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위원장 최민희 적법합니까?

○증인 김홍일 당연히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여러분, 저희는 25일 날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질의응답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좀 아까 제가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를 여쭈어본 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고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방문진 이사를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추가, 그러니까 ‘새 이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그냥 동어반복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납니다? 임기 만료 후에 새 이사를 선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뭐 방문진이 멈추어 섭니까? MBC가 멈추어 섭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증인 김홍일 그……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냥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증인 김홍일 ……

○위원장 최민희 예,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한 바에 따르면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존중하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존중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당만 존중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방송 3+1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은 대통령께서 직접 KBS, MBC, EBS 사장 뽑는 데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방위원장으로서 저는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방문진 이사 선임에 들어가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우선 이훈기 위원님을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이어서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좀 너무 답답한데, 위원장님은 답변을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온 간부 직원들도 기본적인 업무나 조직도 폐지 못하고 와서 일을 하시는데, 저도 방통위 출입기자를 오래해서 방통위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여기 최민희 위원장님은 전에 부위원장도 하셨고 김현 간사님도 방통위원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저는 오늘 보면서 방통위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한심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했나, 답변하시는 거나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고 저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2인 체제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도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하시고. 제가 이따 지적하겠지만 2인 체제의 문제점이 많은데 무조건 팬찮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별로 설득력 있게 답변도 못 하시면서 계속 시간만 끌고……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회 분들의 어떤 태도나 준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제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이훈기 위원님 말씀 받아서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코드 틀어 놓고 상임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김홍일 위원장의 위증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본인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최민희 위원장님의 법률자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말로 했었지

조문 해석을 요청한 적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홍일 별도로 법률 해석을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20일 자로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이 법무법인에 방통위 회의 운영 관련 법률자문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일시적이 아니면 위법의 가능성 있다 는 취지의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의안정책관리팀이 위원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위법성을 숨기기 위해서 위증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홍일 저 오기 전의 일입니다.

○황정아 위원 게다가 김현……

○증인 김홍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이, 2인 체제가 위법이라고 그렇게 결론 난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저기, 잠시만요.

황정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어서 증인과의 일문일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좀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황정아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말씀처럼 2017년에 2인 체제가 명시적으로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는지 확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이미 방통위에 2인 체제 관련 법률자문 일체를 방통위에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지난 10월 법률자문 결과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문만 속아서 제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순서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래 추가질의는 다 하는 것인데요. 혹시 안 하실 분이 계시면 순서에서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예.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용무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휴정, 휴회, 휴식시간 10분 갖겠습니다.

(「15분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15분?

(「10분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4시 15분에 개회하겠습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를 저희가 다시 나누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조인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는 데요.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지요.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불법은 아니나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럴 경우에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평상시처럼 운영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 시급한 안건이나 이런 것만 처리하는, 이렇게 운영해야 될까요?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 선임 완료 시기가 도대체 불확정한 상태에서 업무를 그냥 무조건 방기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그 안건 74건 중에 분류할 수 있나요? 이게 당장 안 되면 큰일 날 그런 안건이 몇 개나 되는가요?

○**증인 김홍일** 그것을 그렇게 분류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인철 위원** 그렇다면 합의제 기관의 정신을 발휘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지금 10개월 동안 74건 하셨다 그랬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게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그 이전 기간에 월평균 몇 건 했습니까? 10개월 동안이면 지금 이게 평균적으로 7.4건인데요. 그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때그때마다 편차는 있겠는데 지금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최소한으로 운영된다면 7.4건보다는 더 낮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 안 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74건 중에 그렇게 시급한 게 어떤 거였는지 그것을 분류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신가요?

○**증인 김홍일** 글쎄요, 그게……

○**조인철 위원** 그렇게 분류해서 좀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대통령께 독대를 요청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그만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이 과정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방위에서 통과된, 법사위로 올라간

안건 있지요. 법률안 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얘기 들었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지금 독임제처럼 운영되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뭐 하실 건가요?

○증인 김홍일 추천권이 있는 분들께서 추천을 안 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한민수입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우리는 방송 정상화 3법이라고 합니다. 3법, 무슨무슨 법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알고 있습니다.

○한민수 위원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법입니다.

위원장님 취임 전이긴 합니다만 이 방송 3법이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거부권을 대통령이 사용을 했고 결국은 폐기가 됐는데 어떤 이유로 거부권이 사용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한민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요?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말 어떤 정치세력이 됐든 여야를 떠나서 정권이 바뀜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사 수를 확대하고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사장도 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방송 3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대통령께 당시 위원장님 취임 전에도 이동판 위원장 때 거부권을 방통위가 건의했습니까? 몰라요?

○증인 김홍일 그것은 건의를 한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제가 말씀드린 방송 정상화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국무회의 열리고 하면 대통령께 그 소관 부처나 각의에서 건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거부권을 써 달라고 하든지.

○증인 김홍일 예.

○한민수 위원 그럴 생각이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진행 경과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민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3법과 저희들이 더 좀 보강을 했습니다만 큰 기본 철학과 방향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통과 과정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 또 한 번 거부권을 쓰겠다, 쓸 수 있도록 대통령께 또 명분을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증인 김홍일**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 꼭 거부권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 주기를 촉구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독임제로? 제가 처음 질문드릴 때, 질의할 때 ‘74건 중에 이견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인지는 기억을 못 하신다고 했고 그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찾아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증인 김홍일** 찾아보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찾아서……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그것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그 것이 녹여져서 안건으로 될 때 그때 다 수용이 돼서 해결이 된 것인지……

○**한민수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증인 김홍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해서……

○**한민수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들에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께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밑에서 이제 다른 실무 직원들이 만들어 오면……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만들어 오면 그냥 두 분은 거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만 시켜온 겁니까, 지금까지?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그 보고를 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그 안건의 문제점이나 장단점이나 그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민수 위원**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아무튼 이견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증인 김홍일** 예,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저희 의원실로 좀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과방위 위원님들 열두 분의 시간, 정말 아깝습니다. 왜 그러면 너무 위원장께서 여기에 나와서 대답을 하시는 게 여기 왜 나와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건설적인 시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조인철 위원님께서 기관장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돌려서 말하신 것 같고요.

자꾸 국회 탓을 지금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회 탓을 하실 거면 국회가 일을 하면 되긴 돼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필요 없지요. 국회만 있어도 방통위 돌아가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기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시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 놓은, 대통령을 위한 실적 말고 국민을 위한 실적 한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홍일** 제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한.....

○**이해민 위원** 국민을 위한 실적이 무엇인지?

○**증인 김홍일** 저는 늘 모든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해민 위원** 아니, 아니요아니요 아주아주 구체적인 실적 하나만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늘 모든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시각에서 업무 처리를 했습니다.

○**이해민 위원** 지금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셔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같으면 바로 해고입니다.

왜 해고 사항인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라서 답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심위의 심의 제재 남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소송이 몇 번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증인 김홍일** 소송이 뭐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해민 위원** 여러 건 말고요, 숫자.

○**증인 김홍일**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큼 쓰였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아시나요, 소송비가?

○**증인 김홍일** 1억 9000만 원이라고.....

○**이해민 위원** 예,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지요?

○**증인 김홍일** 국민 세금입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혈세입니다.

MBC가 제기한 13건의 소송 중 11건이나 집행정지가 인용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증인 김홍일** 그것 좀 말씀드릴까요?

○**이해민 위원** 아니요, 너무 길게 또 질질 끄실 것 같아 가지고. 방심위가 심의를 영망으로 했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 두 분, 아까 대통령의 아바타까지 나왔, 그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두 분이서 판단할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 가진 여러 위원들이 합의를 하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소송, 혈세 낭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 받고 공영방송 무너뜨리러 왔다고 자백을 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책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든지 결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증인 김홍일 모릅니다.

○이해민 위원 사퇴 의사가 없다면 입법부에서는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국민이 명하는 해고를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김홍일 제가 방심위 소송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홍일 지금 방통위와 방심위의 관계는 방심위가 방송 심의나 제재처분을 방통위에 요청을 하면 방통위는 거기에 기속되도록 방통위 설치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의 어떤 제재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 명령을 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나 제재처분을 받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가 그 소송에 응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다든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백으로 간주되고 결국 패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설치법에 방심위의 결정에 기속되는 그 규정이 형해화돼 버리기 때문에 방통위로서는 소송에 응소를 해서 소송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해민 위원 MBC가 제기한 13건의 소송 중 11건이나 집행정지 인용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숫자라고 보신다면 계속하시고요.

○증인 김홍일 집행정지는요, 제가 또 그것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다음에 말씀을……

○증인 김홍일 집행정지는 보통의 경우 제재처분 명령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부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방송을 해 버리면 그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제재처분 자체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나중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해민 위원 1억 8000만 원, 1억 9000만 원에 해당되는 국민 혈세 낭비했다는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홍일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다시 받아 내게 돼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민희 지금 방통위원회가 말씀하신, 이게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돌려 받는다 이 말이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기억하십시오,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 3차 질의 기회 또 있으니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이준석 위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법청문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 김현 간사님께서 제안하셨던 이런 방통위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다른 안들에 보면 대부분 오늘 저희가 논의한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고, 김현 의원님 안에 따르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대통령께서 추천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 간사님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 안 하면 추천한 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라는 추정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조항이 저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기존의 방통위법으로도 대통령은 당연히 임명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차피 형사적으로 소추되지도 않고, 별처 조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강행 규정성 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법률가로서 혹시 위원장께서 대통령께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셨을 때 다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대안을?

○**증인 김홍일** 글쎄요, 그게 생각 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법률 전문가이신 위원장께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일반론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석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대통령은 헌법 78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면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이 어떤 자격 요건,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법 제쳐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어떤 추천이 왔을 때 대통령은 그 사람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이준석 위원**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따라서 지금 그렇게 며칠 지나면, 30일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예, 취지 아시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증인 김홍일** 예.

○**이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만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사실상 이제 도장란·옥쇄란 정국을 만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되었던 특별검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 그러니까 2인의 특별검사를 추천한 다음에 원래는 대통령께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선택 안 하신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도장란·옥쇄란 정국을 만드실 거라는

예상이 있으면 입법부에서 발의할 때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봄’ 이런 조항을 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법률가로서 위원장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를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대안은 없으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소위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것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태협안의 도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이나 경영진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실질적 임면권을 인정하되 방송노동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협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장으로서 사장 임명동의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만 방송 3법이나 방통위 설치법 같은 경우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대단히 심대한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그 법안들이나 사회 쟁점으로 꼭 지금 우리 해소해야 되는 입법……

.....

수요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께서 혹시 방통위원장 차원에서 제안하고 싶은,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선임 구조에 대한 고민 또는 복안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현행 제도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홍일** 하여튼 지금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팬찮은 것 같고……

○**이준석 위원** 아니, 저희가 입법청문회로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신데 반대만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혹시 의견이, 대안이 있으신지?

○**증인 김홍일**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다음번에 혹시 모실 기회가 있으면 대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민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갑의 이정현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녹음기를 틀어 놓고 말하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해서 74건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신속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는요 선임 완료가, 상임위원 선임 완료가 언제 될지 모르는 불확정한 상태에서 업무를 그대로 방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업무를 방기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신속하게 서둘러서 결정을 해야 된다?

○**증인 김홍일** 아니, 신속하게 서둘러서가 아니고 철저히 이렇게 검토해서 처리하지만 하염없이 그냥 방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물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74건에 대해서 방통위가 의결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방송 심의, 제재조치 명령과 관련해서 방송 심의와 관련된 안건 처리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증인 김홍일** 선거방송 심의 말씀하신 겁니까?

○**이정현 위원** 예, 선거방송을 포함해서 방송 심의와 관련된 규정이.....

○**증인 김홍일** 스물.....

○**이정현 위원** 예, 스물다섯 건입니다.

○**증인 김홍일** 다섯 건이라고.

○**이정현 위원** 예, 스물다섯 건이고 그 가운데 절반가량인 십여 건이 4월 10일 22대 총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송 심의와 관련해서 제재조치 명령을 재심하는 것들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거나 해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했어야 되는 겁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이정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 이것을 의도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여당과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는 방심위의 의결에 따른 행정처분 그 제재조치의, 제재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속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는 그 정도입니다.

○**이정현 위원** 윤석열 정부는 경찰과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앞세워서 모든 권력기관과 규제기관이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면직·해임·해촉, 표적 기소 반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민생과 관련된 방송통신 현안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계획이 논의되거나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께서 모르시면 사무처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조성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앱결제 관련해서 구글하고 애플에서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양의 의견서를 저희들한테 보냈……

○**이정현 위원** 8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업계의 의견 수렴만 하고 있는 겁니까?

○**증인 조성은** 아니요,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애플하고 구글에서 자기 의견서를 굉장히 많은 양으로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현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겁니까?

○**증인 조성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정권에 유리한 안건들은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결정들은 계속 미루고 있는 방통위원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YTN 민영화 1인 의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PPT, 방통위원장님은 2인 체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니까 다음으로 넘겨 주시지요.

방통위원회에서 YTN 매각 의결 관련해서 두 가지 안건을 다뤘어요.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나·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이고 하나는 이동관 위원장 기피 신청에 관한 건이에요. 그러면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제척 대상자를 빼고 1인이 두 안건 다 결정을 한 겁니까, 그날? 그날 회의가 어떻게 된 거지요?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척사유 한 분은 빼고, 그러니까 이상인 건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동관 위원장 혼자 결정을 하고 반대 건은 또 반대로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그날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김홍일** 이것은 제가 없을 때 일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알아서……

○**이훈기 위원**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이게 YTN 매각과 관련해서……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그리고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보류됐던 안건을 처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고요.

그리고 저는 업무 파악…… 그날 어떻게 됐냐 하면 기피 신청을 기각했어요. YTN 노조하고 YTN 우리사주조합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기각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노조 건은 기각이 타당한데 우리사주조합은 경영권에도 관여

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각이 안 됐어요. 그러면 YTN 이 매각과, 결정된 의사결정은 다 무효예요, 불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증인 김홍일 잘못……

○이훈기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신 건지.

○증인 김홍일 저는 하여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훈기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오셔서 최종 결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 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상인·이동관 기피 신청에 대해 의결한 속기록, 회의록 원본, 비공개 처리하기 전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척 여부, 기피 신청을 각하 의결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근거 자료, 검토 자료 일체를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방통위원회께서는 계속해서 1인 체제, 사실상 1인 체제가 적법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PD수첩 판결, YTN 판결 또 소송,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판결 이런 데 보면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하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이게 판사의 판결입니다. 판사 의견입니다.

또 방통위원 정원과 관련해서 유사 판결이나 판례나 법령이 있으면 찾아와라, 특히 법원이 계속해서 제동,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홍일 위원장께서는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할 예정입니까? 윤석열 정부 아래 법제처장 있잖아요, 법제처에. 이것 2인 체제가 합법이냐 이것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물어보실 겁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동영 위원 검토해 봐요?

○증인 김홍일 예.

○정동영 위원 아니,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법제처에다가.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본인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김홍일 개인의 판단인 것이고 정부가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법조문 13조 1항과 13조 2항에……

○정동영 위원 그 해석을 법제처가 해야 기속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통위가 받은 법률 자문 내역서에 보면 ‘위원회 구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판단 보류잖아요. 맞지요?

그 로펌 어디입니까? 왜 그 로펌을 공개 못 해요? 로펌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어디서 자문받았는지?

○증인 김홍일 로펌 측에서 애초에 자문을 해 주면서 이것이……

○정동영 위원 비공개를 요청했습니까?

○증인 김홍일 예,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동영 위원 뭐가 그렇게 꿀릴 일이 있어서……

○증인 김홍일 아니, 그 법무법인의 앞으로의 영업이나 이런 것에 그렇다고 하니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자문을 구한 로펌에서 조차 판단을 보류했는데, 이 위원회 구성 문제의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유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결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70년 전의 사사오입과 뭐가 다르냐. 136명이 3분지 2인데 135.333, 사사오입을 해서 135로 해서 독재 개헌했던 이것과 지금 김홍일 체제가 계속 적법하다고 얘기한 것은 70년을 시차를 두고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즉각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김홍일 위원장님, 첫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시고 첫 권익위원장 출신 방통위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권익위원장 재임하셨던 기간 어떻게 되십니까?

○증인 김홍일 약 6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23년 6월부터 12월 정도 오셨는데 김홍일 위원장님의 권익위가 배임을 확인했다던 김석환 방문진 이사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예, 들었습니다.

○황정아 위원 위원장이 권익위원장 시절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김석환 이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6일 만에 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수사 의뢰까지 단 40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언론 탄압을 위해서 무참하게 한 사람을 낙인찍고 괴롭혔던 행태에 대해서 사과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규정대로 업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방통위원장직을 맡으신 것도 권익위 때부터 맡아 온 언론 탄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위원장님,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권익위원장이자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시던 특수부 검사 출신이신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권익위 업무와 관련된 것 같은데 그 일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권익위 일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위원장께서 권익위원장 재직하실 때 발간하신 2024 청탁금지법 해설집

에 따르면 ‘물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선수재법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선방심의위원이 MBC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최고 중징계 의결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거절하기 민망해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뇌물을 받았다고 떠드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글쎄요, 선방심의위의 업무 감사에 대해서 제가,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지위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러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건희권익위’, ‘건희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권익위원장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은 재직하시면서도 대통령 부부 방탄과 언론 탄압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해서 위법·편법·탈법적인 행위를 일삼던 방통위 임기 시작한지 반년 만에 역대 최단 기간 최대 소송 비용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보도를 입틀막 하기 위한 무더기 법정 제재와 언론 장악을 위한 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결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고 방심위·선방심의위 인원을 고루 추천받아 구성하는 이유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요체인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공정 편향적·퇴행적 운영을 일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탄만을 위해서 방통위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로 방통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 부부 방탄만을 위한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김홍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종면 위원** 질문 안 드렸잖아요. 왜 답변을 하세요?

○**증인 김홍일** 아니, 말씀을 하셔서요.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고요.

○**증인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질의가 아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에게 허가를 맡아 주시라고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켜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우리 김홍일 위원장님은 법률 전문가라고 너무 스스로를 자신하시는 게 아닌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판결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김홍일 위원장이 내린 결정은 아니지요. 2인 체제에서 일어난 결정에 대한 겁니다.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방통위법과 방문진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피고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통위법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한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YTN 매각 승인입니다—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왜 단언을 하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버려 주시고요.

○증인 김홍일 지금.....

○노종면 위원 질문드린 것 아닙니다.

○증인 김홍일 예.

○노종면 위원 방송사 최대주주 변경 절차의 심사는 의무사항이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심사해야 되는 거지요?

○증인 김홍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사.....

○노종면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증인 김홍일 심사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위원회 구성도 했습니다.

○노종면 위원 지금 제가 뭘 질문하실지 아시는군요.

○증인 김홍일 아니, 모르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미리 다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 두셨어요?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증인 김홍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심사위원회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증인 김홍일 11월 그때.....

○노종면 위원 작년 보류 결정될 때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없었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때까지..... 그렇습니다.

○노종면 위원 보류 사유가 뭐니까?

○증인 김홍일 그 당시에 공적 책임 이행 방안하고 그다음에 투자 관련한 계획 그것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두 가지는 심사 의무사항의 거의 전부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대부분이지요. 중요한 심사 사항입니다.

○노종면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홍일 예.

○노종면 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판단을 보류한 거지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잖아요.

○증인 김홍일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때 조건을 달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조건을 달았잖아요, 계획을 추가로 확인하라고. 아닙니까? 아니에요?

○증인 김홍일 승인 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면 승인을 하셨겠지요. 보류 결정하셨잖아요, 11월 29일에.

○**증인 김홍일** 그런 승인 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추가로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 심사위원회에서 두 가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읽어 드릴게요. 방통위 공식 발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변경 승인 신청의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그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받아들이셨지요? 그래서 보류 결정 내린 거잖아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그 뒤에……

○**노종면 위원** 여기서 승인 조건 부과하라는 것이 심사 의무 사항의 사실상 전부잖아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증인 김홍일** 법에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런데 그 보류 결정 이후에 심사위 재가동 했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 심사위원회는 해산 심사, 그 당시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끝났으므로……

○**노종면 위원** 가동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증인 김홍일**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는 않고요. 그 심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노종면 위원** 심사위를 굳이 구성해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보류 결정이 났으면 다음 심사위가 구성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심사위 구성은……

○**노종면 위원** 의무가 아니에요?

○**증인 김홍일** 의무는 아니고요.

○**노종면 위원** 그러면 누가 심사했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 심사위원들을 다시 우리가 자문을,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종면 위원** 자문위하고 심사위가 같지 않잖아요. 왜 자문위로 만들니까?

○**증인 김홍일**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노종면 위원** 심사가 보류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심사가 끝납니까?

○**증인 김홍일** 그래서 그분들한테……

○**노종면 위원** 지금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다시 그분들한테 ……

○**노종면 위원**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왜 심사위를 가동 안 했냐고요.

○**증인 김홍일** 그 사람들이 승인 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심사위원회의 활동을 마친 겁니다.

○**노종면 위원** 조건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왜 사실을 가립니까?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가리는 게 아니고……

○노종면 위원 위원장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그 바로……

○증인 김홍일 승인 적격 의견을 내면서 심사위원의 활동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응답이 되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은 마이크가 꺼졌고요, 위원장님은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노종면 위원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건지 3차 질의 때 하실 건지……

○노종면 위원 추가질의를 할 기회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민희 예, 3차 질의 할 겁니다.

○노종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3차 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엉기거나, 저는 위원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것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국회의원들한테, 위원님들께 불리합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방송지원정책이 방송정책과 소관이지요? 이현 국장님, 이거 할 때는 국장이 아니었으니까 모른다고 할 거고요. 만약에 유사한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직전 위원장님이 보류해 놨는데 두 달 만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청문 절차도 없이 행정절차법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두 달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 다음에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이렇게 할 겁니까? 절차 밟을 거지요?

○증인 이현 청문회의 경우는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달 만에, 직전 위원장이 보류 결정을 낸 아주 중차대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걸려 있는 건에 대해서 이제 공적 책임을 다하라는 부대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받고 그다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차가.

○증인 이현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금 이제 절차를 다 밟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예.

○김현 위원 그런데 재승인 이전의, YTN 재승인 과정에서 지적됐던 조건과 부과된 것들을 다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승인을 내준 거잖아요?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YTN의 방송사의 문제이지……

○김현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부과된 조건을 다 이행하는 조건에서 더 하라라는 걸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6월 7일 날. 그런데 그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백 사장이 등장한 아래에. 그 부분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뭡니까?

○증인 김홍일 그 부분에 대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는 그런 보도국장에 관련한 조건

은 없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님이 당시 6월 7일 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린 뒤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없어졌습니다.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다하는 조건은, 그 조건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였습니다.

○**증인 김홍일**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할 때 조건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위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지요, 과방위 행정실에서.

○**김현 위원** 방송정책국장님 바로 확인해서 쪽지 넣어 주세요.

○**위원장 최민희** 확인해서 주십시오.

○**김현 위원** 그게 조건에 부과되어 있는지 아닌지, 원래 승인 조건인지 아닌지.

○**증인 김홍일** 조건에 열 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지금요, 답변 기회 안 드렸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제가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위원장님,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며칠까지입니까?

○**증인 김홍일** 12월 21일인가 2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2023년 12월 며칠입니까?

○**증인 김홍일** 21일인가 2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건 언제입니까?

○**증인 김홍일** 12월……

○**위원장 최민희** 내정이요.

○**증인 김홍일** 12월 초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2023년 12월 초에 내정되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그리고 임명된 건 언제입니까?

○**증인 김홍일** 29일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방통위 쪽으로 접촉하신 건 언제입니까?

○**증인 김홍일** 12월 중순, 초부터 했을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2023년 12월 21일까지, 그렇지요?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국민권익위원장이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방통위에 나가서 청문회 준비한 게 2023년 12월 며칠이요?

○증인 김홍일 12월 초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방통위원회 청문회도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무슨 짓입니까?

○증인 김홍일 휴가 내고 했습니다, 그때는.

○위원장 최민희 거기 휴가가 며칠입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위원장 최민희 휴가 한 20일 받았습니까?

○증인 김홍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권익위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휴가는 언제 받고 나간 건 언제입니까?

○증인 김홍일 전혀 제가 나간 날은.....

○위원장 최민희 아니, 답만 하십시오. 권익위는 공무원 직무규정과 상관없이 위원장이 무제한 휴가 받습니까? 이를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또 3일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증인 김홍일 복무 규정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 규정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규정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권익위원장이 권익위원회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서 방통위 쪽에 가서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 당장 가져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당장 가져오세요.

또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홍일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몇 년입니까?

○증인 김홍일 3년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권익위원장 임명받아서 재직 몇 개월 하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6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여기가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임기가 있는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는데 그걸 수락하신 이유가 뭐니까? 답변하세요, 수락하신 이유가 뭐니까?

○증인 김홍일 위원장님, 오늘 입법청문회 자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민희 관계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을 들어보시면 왜 묻는지 알 겁니다.

임기가 있는 3년 임기의 권익위원장은 하다가 7월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5개월 정도 돼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원장은 왜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제 질문, 그러면 평소에 방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최민희 잠깐만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법률가를 하시면서 있었습니까? 답변하시지요.

갑자기 권익위원장 5개월 정도 하시다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되고 수락하고 청문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매우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지요. 있으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방통위 설치법의 방통 상임위원의 자격에 법조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에 법조인이 차고 넘칩니다. 굳이 김홍일 위원장께서 방송과 통신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이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력에, 되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경력에서 드러납니다. 하다못해 KBS 이사라도 합니다. 없습니다.

조성은 처장 나와 보시지요.

○**증인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와 방심위는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조성은** 뭐에 관해서 질문하는 건지……

○**위원장 최민희**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다. 그 취지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방통위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정말 그렇습니까?

○**증인 조성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합니까?

○**증인 조성은** 관리 감독은 따로 없고요. 방심위 전체 예산이 방통위 보조금으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방심위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점검이나 회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런데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에 주로 있었지요?

○**증인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방통위로 오게 되는 특별한 과정이 있습니까?

○**증인 조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는.

○**위원장 최민희** 진짜 모르세요?

○**증인 조성은** 예.

○**위원장 최민희**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기억나는 작업이 뭐였습니까, 방통위 와서?

○**증인 조성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위원장 최민희** 기억이 나는 거요.

○**증인 조성은** 제가 와서 보니까 방심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점검을 이제 막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와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을 보니까 방심위에 대해서 10월 달에 회계검사 계획이 또 잡혀 있어서 이걸 방심위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 점검이나 회계검사 하는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을 합쳐서 회계검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러니까 방심위 감사했네요.

○ 증인 조성은 예, 회계검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예, 회계감사 했는데 사실상 나중에 정연주 위원장이나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건의를 할 때 회계감사 결과만 가지고 했습니다.

○ 증인 조성은 저희가 해촉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건의될 때 그 내용 중에 감사, 그게 나중에 이제 방통위의 감사 결과가 해촉 건의로 이어집니다. 아닙니까?

○ 증인 조성은 검사 결과를 뭐 이용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활용한 것.

○ 위원장 최민희 이용했지요?

○ 증인 조성은 예.

○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회계감사만 있었습니까?

○ 증인 조성은 회계감사만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정연주 위원장 등의 출퇴근 시간은 어디서 확인했습니다? 감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 증인 조성은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그게 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증인 조성은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조성은 기재부의 보조금 집행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보조 사업자에 대한 근태 관리도 보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아까 회계감사만 했다고 했잖아요.

○ 증인 조성은 예, 그러니까……

○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처음부터 다 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는 25일에 현안질의를 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물을 테니 준비하시라고요.

○ 증인 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혹시 저희가 과방위에서 통과한 4개의 법안, 내용은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 증인 김홍일 예.

○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그중에 공영방송 이사와 관련하여 핵심 조항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 증인 김홍일 예.

○ 위원장 최민희 가장 핵심 조항은 뭡니까?

○ 증인 김홍일 여러 가지가 지금……

○ 위원장 최민희 아니, 가장 핵심 조항요.

○ 증인 김홍일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는……

○ 위원장 최민희 예, 늘리는 겁니다.

그럼 혹시 그 구성을 아십니까?

○ 증인 김홍일 압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것 좀 얘기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인터넷으로, 국회방송으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방통위원장님 입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증인 김홍일 지금 KBS하고 방문진은 국회에서 5명, 그다음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 보도·제작·기술 등 직종 대표성을 고려한 단체에서 6명 해서 21명이고요. EBS는 국회에서 5명, 그다음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3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그다음에 직종대표 6명,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명 해서 21명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런데 일각에서 그 법에 대하여 친민주, 친민주노총 법안이고 이재명 대표의 방송장악 속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송장악 속셈입니까?

그리고 아까 살짝 빼셨는데, 미디어학회 추천이 6명이지요?

○증인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 미디어학회 누가 결정합니까?

○증인 김홍일 방통위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증인 김홍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러면 국회 추천 몫이 5명이지요?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여야로 나누면 민주당은 고작 최대 2명 내지 3명 추천하겠지요, 많아야?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있는 방통위는 미디어학회에서 6명 추천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두고 이거는 대통령 방송장악 속셈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리지 않지요?

○증인 김홍일 .....

○위원장 최민희 이 정도도 답변 못 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오늘은 방통위법 관련한 청문회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은 이 법률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의견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님, 6월 14일, 18일 안 나오셨잖아요?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그래서 방송 3법 질문을 위원장께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방통위 설치법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모르셨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렇게 위원장 모십니까?

현안질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현안질의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지요? 방통위원이 국회에서 여야 추천

몫으로 추천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김현 의원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증인 김홍일 제가 김현 의원에 대해서……

○위원장 최민희 아니, 아까 이준석 위원이 질의하신 게 김현 의원 법안 내용입니다.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에 대하여……

○증인 김홍일 예, 예,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게 대통령의 소위 인사권 침해라는 요지로 답하셨어요. 맞습니다.

○증인 김홍일 예.

○위원장 최민희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회에서 추천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헌법이나 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대통령이나 주변이 그거 점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즉시 임명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과 신장식 의원은 30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했고, 신장식 의원 법안과 김현 의원님 법안의 차이는 김현 의원님은 ‘30일이 지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30일에 반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대통령은 일개 위원 1명 소위 검증하는 데 얼마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꼭 답변하셔야 돼요.

○증인 김홍일 그것이 딱히 얼마 걸린다든지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민희 지금 그게 법률가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 7개월 이상 검증한다고 계속 질질 끌어도 됩니까? 아니, 행정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지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기준이 있어야지요. 과거 방통위원 검증할 때 법제처가 7일 이내에 자격요건 적격, 부적격 하다가 갑자기 7개월이 지나도 판단을 안 합니다. 이게 법률가로서 용납되십니까? 이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늘 못 하시겠으면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과연 국회에서 추천하고 의결한 야당 몫 혹은 여당 몫 방통위원에 대하여 대통령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검증해야 하는가? 30일인가, 두 달인가, 7개월인가, 1년인가?

제가 왜 이거 묻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요? 언제 위원이 임명될지 모르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 이러저러하게 한다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당연히 그렇게 말씀……

대통령 호위무사 하시려고 방통위원장 맡으셨습니까?

○증인 김홍일 .....

○위원장 최민희 자,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차 질의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러면 이해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 계속 오늘 입법청문회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질문을 피해 가시는데 2인 체제에서 졸속 처리된 여러 안건들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왜 방통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인 체제하의 국민혈세 낭비 2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7월 5일,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해서 이 질문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배석한 가운데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졸속 처리했습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수신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수신료가.....

○**이해민 위원**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처리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홍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시행령상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는 시점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증인 김홍일** 시행령이 즉시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즉시 시행 맞습니다. 즉시 시행이지요. 그런데 KBS하고 한전은 1년간 시행령을 위반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KBS와 한전이 지금 시행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년치 수신료 102억 원에 대한 수신료 징수가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야권 추천 위원 폐성하고 2명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벌여 놓은 일을 KBS하고 한전이, 국민들이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34만 가구에 대한 미납금·가산금 얼마나 되는지, 추징 가능한지, 손실분은 얼마인지, 미납금과 미납금 규모에 대해서 지금 방통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증인 김홍일** 34만 가구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해민 위원** 분리납부 신청을 한 34만 가구.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이번에도 아까 방송 3법이라고 하는 우리 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이사진 구성에 대해 가지고 소위 좌파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념적으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좌파가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 하는데 아까 질의 내용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혹시 좌파단체를 의도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글쎄요, 그게 입법화가 돼 봐야 말씀드릴.....

○**이준석 위원** 아니, 추천하시면 안 되지요. 의도적으로 좌파단체를 추천하시면 큰일

나지요.

그러면 좌파단체와 좌파단체가 아닌 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이준석 위원 그리고 그 외의 구성을 보면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단체, 경제단체 등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모두 좌파가 되었다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왜 이 법안대로 이사진을 선임하면 좌파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주장한다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증인 김홍일 글쎄요, 제가 그것 답변……

○이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구성을 봤을 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제가 대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 위원회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테고 결국엔 이 법이 집행될 텐데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그리고 위원회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단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지금 아직 입법 단계라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너무 빠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언론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추진에 반대하면서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실상의 연대를 선거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 관련 단체들이 좌파단체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는 좌파단체와 연합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체의 정체성이 좌파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단체가 좌파 단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홍일 글쎄요, 지금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편향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그 단체가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해 왔는지 그런 것이 시급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준석 위원 언론중재법은 상당히 자유를 원하는 법인데 이것에 반대하면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합의제 기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의사는 동등한 가치를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예.

○**이정현 위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5명은 똑같은 의사의 가치를 갖고 방통위원장이라고 해서 2.5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두 사람이 5명의 봇을 담당하면서 독주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계속해서 방통위를 이끌면서 74건의 의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증인 김홍일** 저희 둘은 임명된 사람인지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권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지, 저희 둘이 근무하는 것이 우리가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방통위를 2명이 아니라 5명으로 구성한 의의가 있겠지요? 취지가 있겠지요?

○**증인 김홍일** 그렇겠지요.

○**이정현 위원** 2명이 결정하는 것은 독주나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명이 결정하라고 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인 김홍일**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5명을 임명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독주를 하실 겁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독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법원의 두 차례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있고 위법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의결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증인 김홍일**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사람이 계속해서 독주를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 김홍일**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추천을 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독주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절대 윤석열 정권 지키기 그리고 언론탄압, 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통위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이동관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 시절에 YTN 매각 관련된 회의 결정을 두 분이 하신 겁니까, 한 분이 하신 겁니까?

○**증인 김홍일** 두 분이 하셨겠지요.

○이훈기 위원 그러면 기피신청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YTN 우리사주조합은 그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두 분이 했다면 그것은 그 회의가 인정 받을 수 없고 불법이지 않습니까?

○증인 김홍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그 과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틀림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인 김홍일 그건 제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두 분이 결정을 하셨다는데, YTN 우리사주조합은 당사자로 인정을 받아서 자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분이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두 분이 했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YTN 매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상인·이동판 기피신청에 대해 의결한 속기록, 회의록 원본, 비공개 처리하기 전의 원본 그리고 제척 여부, 기피신청을 각하 의결한 판단 근거 등에 대한 근거자료, 검토자료 일체를 당장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협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250년 전의 미국독립혁명에 불을 붙인 토마스 폐인의 ‘상식론’ 읽어 보셨지요?

○증인 김홍일 제가 못 봤습니다.

○정동영 위원 폐인의 ‘상식론’을 모르신다고요?

○증인 김홍일 못 읽어 봤습니다. 제가 저서나 이런 내용은 그런…… 직접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법률가에게 기본 서적일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정의 기초가 상식입니다, 상식. 아까 과방위 위원회 결정을 위원장 혼자 할 수 없다고 하셨고 김홍일 위원장께서도 혼자 방통위 결정은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인 결정은 왜 되는 겁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혼자는 결정 못 한다, 그런데 둘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김홍일 저희들 회의제이기 때문에 지금 2인이 하는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예? 뭐 때문에요?

○증인 김홍일 회의제이니까요, 회의제.

○정동영 위원 회의제?

○증인 김홍일 예, 저희들 의사를 회의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동영 위원 회의……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법 13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3조. 그런데 4조,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재적이 5명 아닌가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증인 김홍일 정원이 5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정원이 5명이고 재적은 2명이다?

○증인 김홍일 지금 같으면 2명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재적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재적이라고 한다고 대법원이 그렇게……

○정동영 위원 그래서 제가 70년 전 사사오입 개헌이나…… 재적과 정원을 구분해서, 그건 말장난에 다름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인 체제라는 말을 그냥 쓰는데요. 체제라는 말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2인 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제라는 말 대신 예를 들면 통치체제, 행정구조 이런, 통치체제가 위에 있는 개념이고…… 2인 구성이나 2인 구조라는 말은 말이 되지만 2인 체제라는 말은 이게 문제가 있는 용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2인 구성으로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 김홍일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요?

○증인 김홍일 예.

○황정아 위원 역대 선방위마다 선거 끝나면 평가를 받아 왔는데 이번만큼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선방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기 선방위 위원장이 마지막 회의에서 이번 선방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고 발언하셨는데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증인 김홍일 선방위 업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국민께서 오죽했으면 선거방송개입위원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선방위 위원 추천 의뢰부터 최종 확정까지 오직 여당 위원들의 의결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제 기구의 형식조차 지키지 않았던 여권 편향 위원회 아닙니까?

여당을 비판하는 방송들만 여지없이 심판대에 올라서 역대 최대치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30건의 법정제재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가 28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 관련자 징계는 1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단 2건에 머물렀던 수치가 24년 총선 기간에만 1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방위 업무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직권을 남용해서 선방위가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고 입틀막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선방위가 어떤 기준으로 심의 주제를 정했고 무슨 근거로 심의를 했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는 상황인데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 아닙니까?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이렇게 막무가내식 법정제재에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16건 중에서 심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4건이 가처분 인용되었습니다. 방송사의 14대 0의 대승이자 방통위 전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결과 보십니까?

○**증인 김홍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황정아 위원** 법원이 두 차례나 2인 체제, 2인 구성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이 전혀 없는데 법원의 지적에도 방통위는 뭐 어쩌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입틀막, 언론 장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방통위 위원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라는 격언처럼 신속하게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에 또 불출석하실 거예요?

○**증인 김홍일** .....

○**노종면 위원** 시간 없습니다. 빨리 답해 주세요. 아까 양해를 바란다 그러셨는데 또 불출석하실 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증인 김홍일** .....

○**노종면 위원** 안 나오시겠다는 뜻이군요?

○**증인 김홍일** 아닙니다.

○**노종면 위원**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 언제까지 의결하실 겁니까?

○**증인 김홍일** 그것은 하여튼 적절한.....

○**노종면 위원** 그것 일정도 없어요, 아직?

○**증인 김홍일** 적절한 시점에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적절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증인 김홍일** 그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노종면 위원** 방송정책국장님, 언제까지 의결해야 됩니까? 일정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증인 이현**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종면 위원** 사무처장님!

○**증인 조성은** 예.

○**노종면 위원** 언제까지 의결해야 됩니까?

○**증인 조성은** 그것은 사무처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종면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는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도대체?

○**증인 조성은** 아니,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 공영방송의 이사 임기가 다가오고 아까 위원장께서 선임 계획안 필요하다 그러셨잖아요,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아직 그 목표 일정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사주인 유경선 회장과 관련된 사건, 검사한테 뇌물 준 사건이지요? 아시지요, 그 사건? 그것 모르세요?

○증인 김홍일 변호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십몇 년 전 사건 변호라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유경선 회장, 유진그룹 사주의 변호사, 그것도 검사 뇌물 준 사건의 변호사가 지금 부위원장 맞지요? 이분하고 같이 YTN 매각 승인하셨지요?

○증인 김홍일 예.

○노종면 위원 제가 YTN에 대해서 방통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자꾸 부인하는데 방통위는 지난해 YTN 매각 절차를 출속으로 추진했고요. 심사위를 그래도 구성해서 가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심사위의 의견에 대해서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류 사유가 이거예요.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그리고 재정 투자계획 이런 것 확인하겠다 이런 사유를 붙여서 방통위가 보류 결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확인하겠다고 한 이 두 부분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심사 의무사항의 사실상 전부에 해당합니다. 그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님이 오셔서 심사위를 재구성하지 않았고 단 일주일 동안 자문위만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각 승인을 해 버렸습니다. YTN을 유진한테 준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 사주의 변호사랑 위원장님 단둘이서, 맞지요?

자료 제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안 지키시면 위증이에요.

○증인 김홍일 예.

○노종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 위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다음에 위증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위증을 하셨냐면, 2월 9일 날 속기록으로 보면 당시 방송지원과장이 매각 승인에 대한 보고를 쭉 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준 제도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승인이 적절하나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어 관련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YTN의 경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유진이엔티에 의한 편성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엄중한 이행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홍일 위원장은 '이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심사위원회 의견, 전문가·자문위원회 의견, 이행각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이 의견 청취 시 약속한 내용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 중 의미 있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여 승인하겠다'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뭐냐 하면 보도국장의 임명동의제는 기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과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묶고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해서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그 주인이, 경영자가, 그러니까 사업주가 바뀌고 나서 바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약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바로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에서 위원장님에게 보고해서 현장에 벌어진 일들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 체크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에 부과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전부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서 묶어서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민희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위원장님, 이 방통위 입장은 유효합니까?

○증인 김홍일 .....

○위원장 최민희 이게 방통위 입장이었어요.

조성은 쳐장님, 맞지요?

○증인 조성은 .....

○위원장 최민희 맞지요, 이현 국장님?

이현 국장님, 이게 방통위 입장 맞지요?

○증인 이현 예, 자료가 작년 말에 홈페이지에 올린 그 자료가 맞다면.....

○위원장 최민희 아니, 저기요. 방통위 입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밑에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띠 있네요.

○증인 이현 제 기억에 의하면 작년 말에 그렇게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방통위가 입장 표명한 이 법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이거 모르셨나요? 방통위가 이런 입장 냈던 적이 있던 것을 모르셨나요?

○증인 김홍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최민희 아니요. 그냥 모르셨나요, 아셨나요?

○증인 김홍일 정확히 내가 무슨 입장을 냈는지는 대강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위원장 최민희 이 세상에..... 아, 위원장님, 대강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 김홍일 아니,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런 의견을 냈는지..... 지금 저희는 검토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 중이고 우리 내부의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방송정책국장님, 이거 위원장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과거에 이런 입장을 취했다는 것 보고하셨습니까?

○증인 이현 이건 그 전전전임 위원장님의 지시로 해서 만든 보도자료에 있는 자료이고.....

○위원장 최민희 아니, 그렇게…… 저 죄송한데요……

○증인 이현 제가 알기로……

○위원장 최민희 보고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증인 이현 제가 온 다음에는 보고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조성은 처장님, 과거에 방송 3법에 대하여 방통위원회가 이런 입장을 취했었다는 보고 드렸습니까?

○증인 조성은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건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계속?

○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예,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현 위원 지금 자료 요구와 덧붙여서, 지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한 적 없다고 이현 국장이 얘기하셨는데요. 적어도 방통위원회 구조로는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부 위원장이 국회에 답변을 위해서 출석할 경우는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방송정책국, 기조관이 다 모여서 보고서를 갖고 일문일답 형태로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회의 때 제출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회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입법청문회 대비하셨지요, 조성은 처장님?

○증인 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때 위원장께 보고드린 문건 있지요?

○증인 조성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종면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최민희 예, 하십시오.

2분입니다.

○노종면 위원 아까 3차 질의 시간에 위원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국회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의향을 물었을 때 답을 안 하셔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안 오겠다는 입장이면 뭔가 조치까지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희 알겠습니다.

오늘 노종면 위원, 이준석 위원, 이훈기 위원 등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황정아 위원도 하셨지요?

○황정아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서면 자료 요청도 하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내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25일 현안질의를 위하여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회의가 6월 25일, 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로 이어집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25일 오후 2시 출석하실 거지요?  
○증인 김홍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희 출석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됐습니까?  
○노종면 위원 예.  
○위원장 최민희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

### ○출석 위원(13인)

김우영 김 현 노종면 박민규 이정현 이준석 이해민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황정아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서덕교

### ○출석 증인

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  
조성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이현(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3.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1)

6월 14일 회부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5)

6월 17일 회부됨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24. 6. 17.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3)

##### 디지털포용법안

(2024. 6. 1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1)

이상 3건 6월 18일 회부됨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9)

이상 2건 6월 19일 회부됨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 6. 1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024. 6. 19.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5)

이상 2건 6월 20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1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43)

6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2024. 6. 12.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15)

6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